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5 발의연월일: 2020. 6. 9.

발 의 자:한정애·민홍철·황운하

박홍근 • 정춘숙 • 양향자

박광온 • 이탄희 • 송옥주

김경협 · 장철민 · 조오섭

윤관석 · 김주영 · 권인숙

변재일 · 김정호 · 남인순

전혜숙 • 문진석 • 박성준

아수잔비 · 박재호 의원

(2391)

제안이유

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·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「고용보험법」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 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.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 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, 이에 맞추어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 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「고용보험법」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, 사업주,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신고의무를 부과함(안 제48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).
- 나.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보험료 부담주체, 부담비율, 월별보험료 산정, 보험료의 원천공제,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6조의3, 제48조의2제4항·제10항).
- 다.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(안 제16조의10, 제49조의6 및 제50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30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"근로자,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1항"을 "근로자,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(이하 "노무제공자"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2호"로 한다.

제16조의10제1항 전단 중 "근로자 또는 예술인"을 "근로자,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(이하 "노무제공자·예술인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예술인"을 "노무제공자·예술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근로자 또는 예술인"을 "근로자, 노무제공자·예술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"고용하거나"를 "고용하거나 노무제공자와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(이하 "노무제공자와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(이하 "노무제공자와 한다)을 체결하거나"로, "예술인의 성명"을 "노무제공자·예술인의 성명"으로, "그 예술인"을 "그 노무제공자·예술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종료하거나"를 "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하거나"로, "근로자 또는 예술인"을 "근로자, 노무제공자·예술인"으로, "예술인과의 계약"을 "노무제공자·예술인과의 계약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

중 "근로자 또는 예술인이"를 "근로자, 노무제공자·예술인이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사업주 또는 발주자·원수급인이"를 "사업주, 발주 자·원수급인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(이하 "노무제공플랫폼 사업"이라 한다)의 사업주가"로, "제77조의2제3항, 제77조의5제1항"을 "제77조의2제3항·제4항 및 제77 조의5제1항"으로 한다.

제48조의2의 제목 "(예술인 고용보험 특례)"를 "(노무제공자·예술인 고용보험 특례)"로 하고. 같은 조 제1항 중 "예술인"을 "노무제공자 • 예술인"으로, "문화예술용역"을 "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"으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예술인"을 "노무제공자 · 예술인"으로 하 고. 같은 조 제3항 중 "예술인"을 "노무제공자·예술인"으로. "문화예 술용역"을 "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 항 전단 및 후단 중 "예술인"을 각각 "노무제공자·예술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예술인"을 "노무제공자·예술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3항"을 "「고용보험법」 제7 7조의2제3항ㆍ제4항"으로, "예술인"을 "노무제공자ㆍ예술인"으로, "발 주자 또는 원수급인이"를 "발주자·원수급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사 업의 사업주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.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8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예술인"을 "노무제공자 · 예술인"으로 하 며,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중 "예술인"을 각각 "노무제공자·예

술인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중 "예술인"을 각각 "노무제공자·예술인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전단 및 후단 중 "예술인"을 각각 "노무제공자·예술인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"예술인"을 "노무제공자·예술인"으로 하며, 같은 호 후단 중 "예술인"을 "노무제공자·예술인"으로 하며, 같은 호 후단 중 "예술인"을 "노무제공자·예술인"을, "관계기관의 장"은 "관계기관의 장,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 등"을, "사업주"는 "사업주,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"를"로 한다.

- ⑧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는 「고용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무제공플랫폼 사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⑨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는 「고용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 계약의 개시일 또는 해지일부터 14일 이내에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49조의6 전단 중 "제48조의2제8항제3호"를 "제48조의2제10항제3호" 로 한다.

제50조제1항제1호 중 "제48조의2제8항제1호"를 각각 "제48조의2제10항 제1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48조의2제8항제3호"를 "제48조의 2제10항제3호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"제48조의2제8항제 4호"를 각각 "제48조의2제10항제4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했 개 정 아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(월별보험료의 산정) 제16조의3(월별보험료의 산정)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(이하 "월 별보험료"라 한다)는 근로자. -----근로자,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1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1 항에 해당하는 예술인(이하 "예 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 술인"이라 한다)의 개인별 월평 자(이하 "노무제공자"라 한다) 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 및 같은 항 제2호-----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 다만, 월평 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본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16조의10(보수총액 등의 신고) 제16조의10(보수총액 등의 신고)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<u>근로자</u> ① -----근로자,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제2 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 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자가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 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 외한다.

-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·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<u>근로자 또는 예</u> 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(이하 "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는 경우 그 근로자, 예술인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그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

<u>앙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사 및</u>
예술인(이하 "노무제공자・예
<u>술인"이라 한다)</u>
<u>노무제공자</u>
<u>· 예술인</u>
②
- <u>근로자, 노무제공자·예술인</u> -
③ <u>J</u>
용하거나 노무제공자와 「고용
보험법」제77조의2제1항에 따
른 노무제공계약(이하 "노무제
공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거
<u> </u>

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때에는 그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, 고용관계 또는 계약의 종료일 등을 그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또는 그 예술인과의 계약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⑤ 사업주는 <u>근로자 또는 예술</u> 인이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

<u>노무제공자·예술인의 성</u>
명
그 노무제
 공자·예술인
,
4
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
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하거나
근로
 자, 노무제공자·예술인
<u>노무제공자·예술인과</u>
의 계약
⑤
자·예술인이

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야 한다.

⑥ (생략)

① 사업주 또는 발주자·원수급 인이 「고용보험법」 제15조, 제77조의2제3항, 제77조의5제1 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.

⑧ (생략)

제48조의2(예술인 고용보험 특례)

①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.

<u>.</u>
⑥ (현행과 같음)
⑦ <u>사업주,</u> 발주자·원수급인
또는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
2제4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
사업(이하 "노무제공플랫폼 사
업"이라 한다)의 사업주가
조의2제3항·제4항 및 제77조
의5제1항
⑧ (현행과 같음)
제48조의2 <u>(노무제공자·예술인</u>
고용보험 특례) ①
<u>노무제공자</u>
<u>·예술인</u>
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
예술용역

-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「소득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,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 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품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.
-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 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「고용보험법」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 다.
- ④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

<u>.</u>
2 <u>노무제공자 · 예술인</u>
③ <u>노무제</u>
<u>공자・예술인</u>
노무제공계약 또는
문화예술용역
4
<u>노무제공</u>
<u>자·예술인</u>
,
노무제공자·예술인
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<u>예</u> <u>술인</u>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.

-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고용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 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<u>예</u> <u>술인</u>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-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<u>「고용</u>보험법」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</u> 납부하여야 한다.

⑦ (생 략) <신 설>

노무제공자·예술인
⑤
<u>子</u>
<u>무제공자 • 예술인</u>
·.
⑥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
보험법」 제77조의2제3항·제4
<u>항</u>
<u>노무제공자·예술인</u>
발주자・원수급인 또
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
업주가
⑦ (현행과 같음)
⑧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
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노무제
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는 「고
용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업
과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
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

<신 설>

- 8 <u>예술인</u>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.

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노무제공플랫폼 사업 등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 다. ⑨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노무제 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는 「고 용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업 과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 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 계약의 개시일 또는 해지 일부터 14일 이내에 개시 및 종 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 ⑩ 노무제공자 • 예술인-----

을 말한다.

- 2.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・부과에 관하여는 제3 조, 제13조제1항제1호・제2항 (같은 항 단서규정은 제외한 다)・제4항제2호, 제16조의2 제1항, 제16조의4, 제16조의6 부터 제16조의9까지, 제16조 의11, 제16조의12, 제18조제1 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근로 자"는 "예술인", "고용보험료 율"은 "제48조의2제3항에 따 른 보험료율"을 말한다.
- 3.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지원, 경감, 과납액의 충당과반환,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·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, 제22조의2, 제23조, 제25조, 제26조의2, 제27조의3, 제28조, 제28조의2부터 제28조, 제29조의2, 제29조의3, 제30조, 제38조, 제39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

	<u>노무제공자 • 예</u>
	<u>술인</u>
2.	노무제공자・예술인
	: 노무제공자
	<u> </u>
3.	노무제공자·예술인

"근로자"는 "<u>예술인</u>"을 말한 다.

4.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 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, 자료 제공의 요청, 보고,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, 제40조, 제4 1조, 제42조, 제44조, 제45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근로자"는 "예술인"을 말한다.

제49조의6(벌칙) 제29조의3제6항 제 (제48조의2제8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.

제5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

· <u>노무제공자・예술인</u>
 4. <u>노무제공자 · 예술인</u>
노무제공
자·예술인"을, "관계기관의
장"은 "관계기관의 장, 노무
제공플랫폼 사업주 등"을,
"사업주"는 "사업주, 노무제
<u>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"를</u> -
49조의6(벌칙)
- <u>제48조의2제10항제3호</u>
· 50조(과태료) ①
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11조(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, 제12조(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,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,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
- 2. 제29조의3제1항(<u>제48조의2제</u> <u>8항제3호</u>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금융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 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
- 3. 제44조(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

_		
1.		<u>제48조의2제10항제1</u>
	<u>\$</u>	
		2.222
		<u>제48조의2제1</u>
	<u>()항제1호</u> -	
2		제48조의2제
᠘.		<u>///40/12///</u>
3.		·제48조의2제10항제4

- 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 를 제출한 자
- 4. 제45조제1항(<u>제48조의2제8항</u> <u>제4호</u>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②・③ (생 략)

4제48조의2제10
항제4호
②・③ (현행과 같음)